

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1007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해

담당변호사 오근영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2. 23. 접수 제503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두 번째 거시부터는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지칭한다)은 물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C는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한편, D라는 상호로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 1) 원고는 2021. 11. 25.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순번에 의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은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다.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F	270,000,000	2021. 11. 25.부터 2022. 11. 24.까지
2	G	450,000,000	2021. 11. 25.부터 2022. 11. 24.까지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후략).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4. H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8.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인 경우 공동경영자(실제 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

3) B은 2021. 11. 25.경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합계 800,000,000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출금 300,000,000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출금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은 2022. 12. 22.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50383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B에 대한 부실처리

C가 개인사업체 D에 관하여 발행한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2023. 1. 2.경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당좌부도 처리되었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2023. 1. 3. ‘대표자 등 부실사유 발생으로 인한 신용악화’를 이유로 B에 대하여 부실처리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은 피고에 대하여 허위의 대여금채무를 작출하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앞으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구상금채권은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와 같은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2) 피고는 B에 대한 1,5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3)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4) 이 법원의 변론종결 무렵에는 B의 변제 자력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2023. 1. 2.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C가 개인사업체 D의 운영에 관하여 발행한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 또는 H의 부도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2022년 재무제표상 유동자산 2,770,836,570원 중 약 93%에 이르는 2,573,785,716원이 C를 비롯한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B이 C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B의 재정상태는 C 등 임직원의 재정상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C의 B에서의 지위나 B의 회사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당좌부도의 발생은 B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8호의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 또는 H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부도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23. 1. 2.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B에 대하여 보증금액

합계 720,000,000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270,000,000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450,000,000원) 상당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해 준 이상,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 채권의 발생 사유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사전구상금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보증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관행 및 그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사전구상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 채권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2. 12. 22.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전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불과 1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3. 1. 2. C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당좌부도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은 I에 대하여 85,000,000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C 또한 피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2023. 11. 24.경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나, 신용보증인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대출금융기관이 주채무인 대출금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해 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무상 기한연장을 거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B의 재정상태가 건전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B은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대출기한 만료시점에 계속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증사고를 모면하여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B 및 C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C에 대한 당좌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2) B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B의 재산상태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의 적극재산1)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372,000,000원

① 2018. 11. 30. 무렵 E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72,000,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에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이 사건 각 부동산 및 I 소유의 진주시 O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인 2015. 6. 24.경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250,000,000원으로, I 소유의

진주시 O 토지의 가액 4,017,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I 소유의 위 토지가 전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공제될 것이 아니다].

② 한편, 피고는 을 제3호증(매도의향서)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500,000,000원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은 C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불과 약 2년 만에 8배 이상 상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며,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500,000,000원이 넘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I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

(2) B의 소극재산

(가) K에 대한 대출금채무: 27,190,683원

(나) L에 대한 대출금채무: 4,264,954원

(다) P에 대한 리스료채무: 28,251,634원

(라)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38,000,000원(그중 114,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이다.)(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 256,640,000원

(바) M에 대한 대출금채무: 6,000,000원

(사) I에 대한 연체차임채무: 85,000,000원

(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1,500,000,000원

한편,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가장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등 참조), B이 피고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20. 4. 15.자 차용증이 존재하고, 나아가 위 차용증에 날인된 B의 인영이 B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보여 그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B에 대하여 1,5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472,000,000원(= 372,000,000원 + 10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무를 제외하고서도 합계 2,845,347,271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2,373,347,271원(= 2,845,347,271원 - 472,000,000원) 가량 많으므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신규 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 및 C의 재산상태, 피고와 B 및 C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 및 C에게 거액을 빌려준 뒤 수년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앞서 본 C의 약속어음 부도 발생과 원고의 부실처리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점, ② 피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B 및 C와 금전거래를 해오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으므로, B와 C의 재정 상태를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력회복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 변제자력을 회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정, 판사 남승우, 판사 김나영

별지

단기채권(주임종단기채권)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기재만으로 B이 위 주임종단기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B이 위 주임종단기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특히 그 재산이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위 주임종단기채권의 성질 및 내용, C의 자금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임종단기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이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임종단기채권은 B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아니한다.